

제 240 호

1972. 6. 5.

발행인 : 서울특별시청 양택식
편집 : 공보실장 손완수
전화 75-7834
인쇄 :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

시보

차 례

편집으로 변경하였...

서울특별시 시민과향

◎ 고 시	3
제 75호 서울특별시 지방문화재 지정	3
제 76호 도시계획 소로일부변경	3
◎ 공 고	4
제 122호 하천공작물 설치허가 취소	4
◎ 사 령	4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제 75호

서울특별시지방문화재지정

서울특별시 지방문화재 보호조례 제 6 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지방문화재 지정을 동조례 제 8 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72. 5. 25.

서울특별시 지방문화재 지정목록

지정번호	문화재명	소재지	지정년월일
지방문화재제 4호	낙성대 (落星臺)	영등포구 봉천동 218	72.5.25
" 제 5호	정업원구기 (淨業院舊基)	동대문구 숭인동 5-4	"
" 제 6호	용양봉거정 (龍驤鳳 ^舊 亭)	영등포구 본동 10-4	"
" 제 7호	성제묘 (聖帝廟)	중구 반산동	"
" 제 8호	사육신묘 (死六臣墓)	영등포구 노량진동	"
" 제 9호	종친부 (宗親府)	종로구 사간동	"

◎ 서울특별시고시제 76호

도시계획소로 일부변경

1. 서울특별시 관내 도시계획시설 (도로) 일부변경을 도시계획법 제 12조 및 동법제 1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관할 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3. 노선변경조서

구분	등급	유별	번호	폭	원	연장	기	점	종	점	비	고
기정	소로	2		8-10m		500m	금호동로타리		신당동	168-60		위치일부변경
변경	"	"		8-10m		500m	"		"	"		
기정	"	"		6m		20m	사직동 300-1		사직동	293-2		
변경	"	"		"m		20m	"		"	"		폐지

(도면은 서울특별시청에 보관)

1972. 6. 2.

서울특별시장

공 고

하천법제 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하천공작물 설치허가를 취소하였기 공고 한다.

◎ 서울특별시공고제 122호

1972. 5.

하천공작물설치허가취소

서울특별시장

허가 년월일	허가장소	수면 종류	공사목적	공작물개요	허가받은자의 주소, 성명	허가취소 년월일	허가취소 사유
	영등포구 고척동 269 번지선	하천 (준용 하천)	통로확보 후잔여부 지양여	복개공사 폭 = 2m 높이 = 2m 길이 = 265m 1인	용산구서계동 김길호외	72.5.31	허가조건 사항위반

사 령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 1972.6.2.

◎ 72.5.31

공무원교육원
교과과

지방간호기원

김귀순

총무과 서기관(과장) 양재범
환경순찰반장 직무대리 겸직
을 명함.